

檢 討 報 告

1. 提 出 者 : 瑞 山 市 長

2. 提出日字 : 1998. 3. 31

3. 提案理由

- 통합방위법이 '97.1.13일 제정되어 '97.6.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서산시 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고자 하는데 있음

4. 主要骨子

- 방위협의회 위원은 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으로 규정함(안 제2조).
- 협의회 심의 사항은 취약지역 대비책, 통제지역 설정,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으로 함(안 제3조).
- 시.읍.면.동에 통합 방위 지원본부를 둠(안 제7조).

-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, 읍.면.동 지원본부장은 읍.면.동장이 됨(안 제7조).

5. 檢討意見

- 본 조례(안)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,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,
- 본 조례(안)대로 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